### 수상에서의 수색・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5890 제출연월일: 2024. 11. 26.

제 출 자:정 부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해양경찰청장이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 등 수난구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·관리하도록 하고, 해당 통계를 효율적·체계적으로 작성·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장이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, 보험이나 공제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·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수상에서의 수색・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조의2(통계의 작성 및 관리)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 등 수난구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수면 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·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의 작성·관리 항목, 공표시기 등 통계의 작성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0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

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0조의9의 제목 "(보험등의 가입)"을 "(보험등의 가입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(이하 "보험회사등"이라 한다)는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.
- ④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험등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.
- ⑤ 제1항에 따른 보험등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 은 양도·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제30조의10제1항 중 "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(이하 "보험회사등"이라한다)"를 "보험회사등"으로 한다.

제46조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제30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등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자
- 9. 제30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자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4조의2(통계의 작성 및 관리)
	① 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
	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
	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
	집행계획 등 수난구호에 관한
	<u>정책의 수립·시행 등에 활용하</u>
	기 위하여 해수면에서 발생한
	조난사고에 관한 통계를 매년
	<u>작성 · 관리하여야 한다.</u>
	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
	른 통계를 작성·관리하기 위하
	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
	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
	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
	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
	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
	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
	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
	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
	요청에 따라야 한다.
	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
	사항 외에 통계의 작성・관리
	항목, 공표시기 등 통계의 작성
	•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
제30조의3(결격사유 등) ① (생 략)

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의 장은 수상구조사의 결격사 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의 내용, 통보방법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0조의9(보험등의 가입) ① • ②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령으로 정한다.

제30조의3(결격사유 등) ① (현행 과 같음)

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 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 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개인 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> 제30조의9(보험등의 가입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(이 하 "보험회사등"이라 한다)는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 할 수 없다.

④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

#### <신 설>

제30조의10(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)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30조의9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·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(이하 "보험회사등"이라 한다) 또는 「보험업법」 제11장제1절의 보험협회 등(이하 "보험협회등"이라한다)에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·관리에 필요한 자료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다.

### ②·③ (생 략)

제4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

1. ~ 7. (생 략) <신 설>

	<u>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</u>
	는 보험등의 계약을 해제 또는
	해지할 수 없다.
	⑤ 제1항에 따른 보험등의 보험
	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
	<u> 구권은 양도·압류하거나 담보</u>
	로 제공할 수 없다.
제	30조의10(보험등의 가입정보 요
	청) ①
	<u>보험</u>
	회사등
	<u>.</u>
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	46조(과태료) ①
	<u>.</u>
	1. ~ 7. (현행과 같음)
	8. 제30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

	보험등 가입에 관한 계약의
	체결을 거부한 자
<u> &lt;신 설&gt;</u>	9. 제30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
	보험등의 계약을 해제 또는
	해지한 자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